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S=None

구 분	용도기호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
산 업 시 설 용 지 A1	P1	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(부대시설 포함) - 제93.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 ·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·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시설	-
지 원 시 설 용 지 B1 ~ B4	S1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, 나목, 다목, 라목 (창술원,접골원,조산원,안마원,산후조리원 제외), 마목, 자목(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은 제외), 아목,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, 라목, 바목, 아목, 자목, 파목(실내낚시장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제외), 하목(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제외), 너목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(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제외),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발전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S2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	S3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S4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, 나목, 다목, 라목 (창술원,접골원,조산원,안마원,산후조리원 제외), 마목, 자목(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은 제외), 아목,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, 라목, 바목, 아목, 자목, 파목(실내낚시장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제외), 하목(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제외), 너목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(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제외),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발전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생 활 대 책 용 지 C1 ~ C8	T1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이 주 자 택 지 D1 ~ D32	T2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,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건축물연면적의 40%미만, 1층 이하에 한함)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주 거 용 지 E1 ~ E2	R1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	R2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	-
기 숙 사 용 지 E3	R3	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	-
주 차 장 F2 ~ F5	Z1	·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· 주차장법에 의한 부대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바목, 사목에 한함) -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건축연면적의 30%미만으로 입지하는 것에 한함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 ·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시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외의 용도
	Z2	·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-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%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
구 분	용도기호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
학 교 G2 ~ G5	Z3	·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	-
	Z4	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) 및 학원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근 린 공 공 시 설 H1, H3 ~ H5	Z5	· 면사무소(보건지소, 농업기술센터, 종대분부, 자율방범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),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 (H4에 적용) 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(H5에 적용하며 유치원 설치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득할 경우에 한함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주 민 공 동 시 설 N1 ~ N9	Z6	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연면적의 40%미만, 1층에 한함 단,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, 바목 제외) 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,바목 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·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)
종 교 시 설 I2 ~ I3	Z6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포함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수질오염방지시설 (폐수종말처리시설) K1	Z8	·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-
유 수 지 O1 ~ O4	Z11	·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	-
가 스 공 급 설 비 Q1	Z13	·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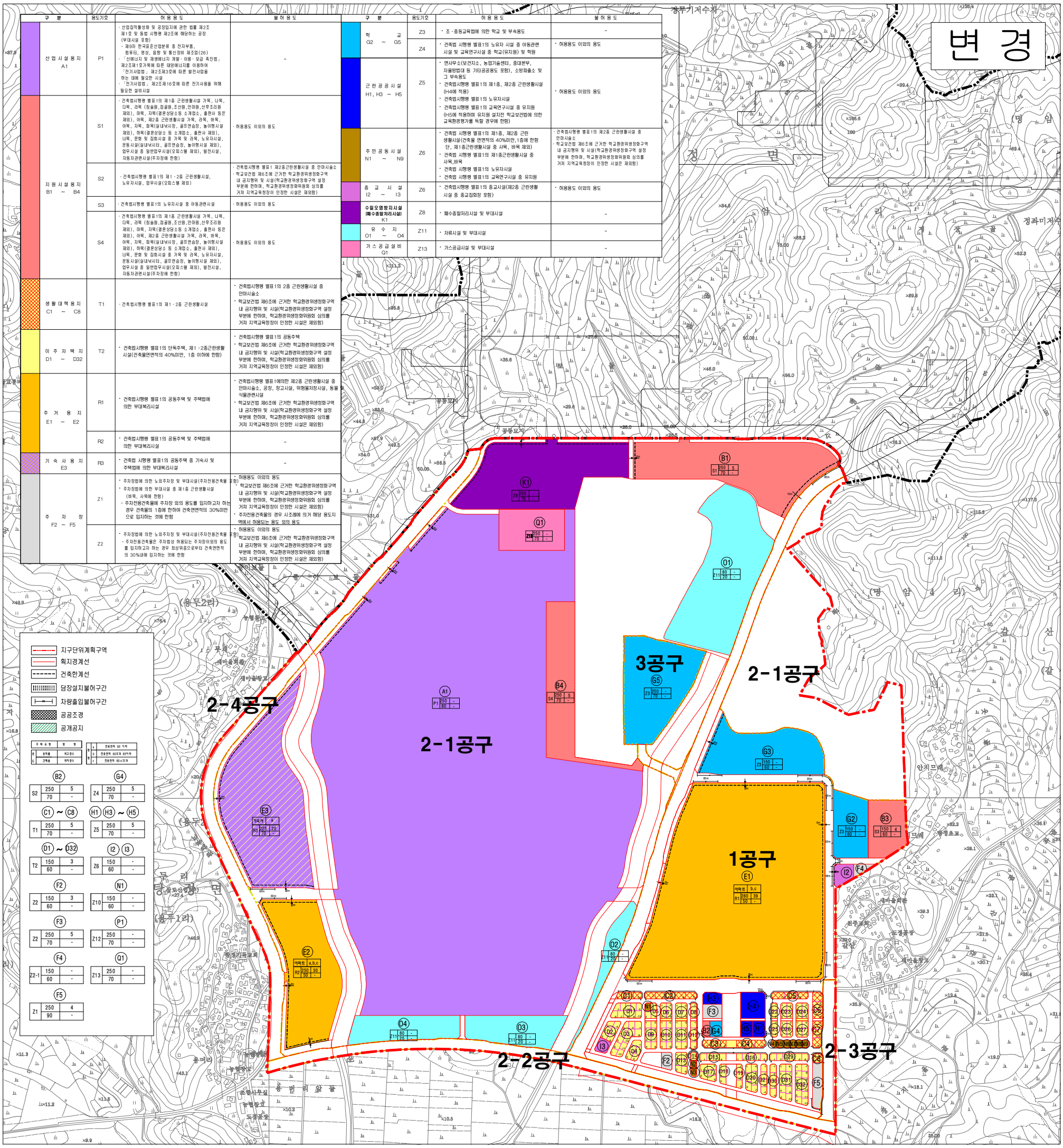

획지	용도	건폐율	용적률
A1	P1	250	-
		80	-
B1	S1	250	5
		70	-
B2	S2	250	5
		70	-
B3	S3	150	4
		60	-
B4	S4	250	5
		70	-
C1 ~ C8	T1	250	5
		70	-
D1 ~ D32	T2	150	3
		60	-
E1	액티트	b,c	
	R1	280	39
		50	-
E2	액티트	a,b,c	
	R2	250	30
		50	-
E3	기숙사	a	
	R3	225	20
		70	-
F2	Z2	150	3
		60	-
F3	Z2	250	5
		70	-
F4	Z2-1	150	-
		60	-
F5	Z1	250	4
		90	-
G2	Z3	150	-
		60	-
G3	Z3	150	-
		60	-
G4	Z4	250	5
		70	-
G5	Z3	250	-
		70	-
H1 H3 ~ H5	Z5	250	5
		70	-
I2 I3	Z6	150	-
		60	-
K1	Z8	250	-
		70	-
N1	Z10	150	-
		60	-
O1	Z11	80	-
		20	-
O2	Z11	80	-
		20	-
O3	Z11	80	-
		20	-
O4	Z11	80	-
		20	-
P1	Z12	250	-
		70	-
Q1	Z13	250	-
		7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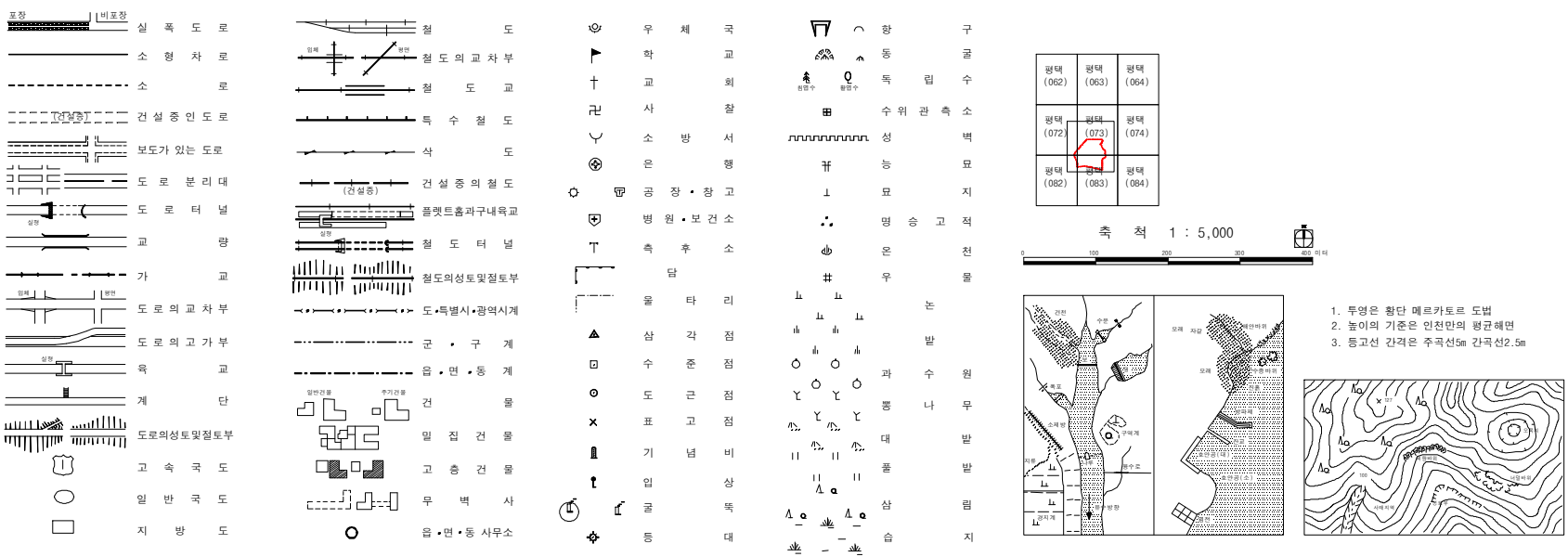

평택 (062)	평택 (063)	평택 (064)
평택 (072)	평택 (073)	평택 (074)
평택 (082)	평택 (083)	평택 (084)

축 척 1 : 5,000

1. 투영은 횡단 메르카토르 도법
2. 높이의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해면
3. 등고선 간격은 주곡선5m 간곡선2.5m